

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

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 질의응답집



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
Center for 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



# 「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」 관련 질의응답

Q

▶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기재된 취급내역불일치(미보고) 내역과 해당 기능에서 조회되는 취급내역불일치 내역이 상이합니다.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?

A

☑ 의료기관, 약국, 도매업체에서 지자체를 통해 수령한 자료는 '19.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시점('21.1)과 보고 내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- 상대취급자(판매업체 · 구매업체)가 당시 '미보고' 였던 취급보고 건을 '19년 9월 이후 판매 · 구입보고 진행했다면, 현재 시점에는 '기보고' 상태가 되어 '취급내역불일치' 내역에서 정상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.

따라서 취급자가 '19년 9월 이후 **정확하게 취급보고를 하여**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구입·판매보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.

# 「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」 관련 질의응답

Q

▶ 구입보고를 완료했는데 ‘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’에서 검색됩니다.  
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?

A

- ☑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자가 취급내역을 보고한 경우일지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‘취급내역불일치’로 추정되어 조회 기능에 검색될 수 있습니다.
  - 구입보고(판매보고) 시 상대 취급자 정보\*를 잘못 입력한 경우
    - \* 동일명칭 거래상대유형(ex. A제약으로서 제조업,수출입업,도매업 보유하고 있는 경우), 제품정보(약품코드 등)
  - 상대 취급자가 보고한 취급일자와 7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

해당 기능은 보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급자의 취급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추출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며, 조회된 자료는 실제로 불일치 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.

# 「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」 관련 질의응답

Q ▶ '취급내역불일치 예외 처리'를 잘못 선택하였습니다. 다시 원 상태로 복원 가능한가요?

A  '취급내역불일치 예외 처리'를 진행한 경우 원래 상태로 복원 기능은 2월 중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

마약류 취급보고 의무자께서는 '취급내역불일치 예외 처리' 전, 반드시 취급보고 내역을 한번 더 확인한 후 기능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로 마약류취급자가 보고한 취급보고 내역은 정확해야 하며,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고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확인하여 변경보고 해야 합니다.

Q ▶ '취급내역불일치 예외 처리'를 진행한 취급보고 건을 따로 조회 가능한가요?

A  해당 기능은 추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

업데이트 후, 취급자가 '취급내역불일치 예외 처리'를 한 보고 건만 별도 조회 가능합니다.

# 「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」 관련 질의응답

Q

▶ 정상보고한 건이라고 판단하여, 취급내역불일치 예외 처리를 진행했습니다. 별도로 변경보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?

A

- ☑ 해당 기능은 불일치로 추정되는 내역을 ‘조회’하는 서비스로, 취급자가 정상적으로 보고가 된 건으로 판단하여 예외처리를 했더라도, 해당 내역이 실제로 정확하게 보고가 된 건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.

예외처리하기 전, 상대거래업체 식별번호 및 약품코드 등 상세항목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직접 취급보고내역에서 확인 후 정상보고건이라고 판단될 시 구체적 사유를 입력하시어 예외처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추후에라도, 예외처리한건에서 오보고건을 인지했다면 변경보고를 해야합니다.

Q

▶ 불일치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잘못 보고된 취급보고 건을 변경보고 하였습니다. 관할 허가기관에서 공무원이 취급자의 변경보고를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?

A

- ☑ 관할 허가기관의 공무원은 마약류취급자의 변경보고 내역을 익일 확인 가능합니다.

# 「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」 관련 질의응답

Q

▶ 구입보고 진행 시 ‘구입대상 목록조회’ 기능에서 조회되는 내역과 ‘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’에서 나타내는 내역이 상이합니다.

A

- ☑ ‘구입대상 목록조회’ 기능은 거래업체의 판매보고 내역이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.
- ☑ ‘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’은 취급보고 내역을 바탕으로 변환된 정보로 처리결과가 익일 반영됩니다.

## 구입대상 목록조회

거래업체에서 판매보고한 내역을 검색하여  
마약류취급자가 구입보고 해야 할 목록을 조회

거래업체의 판매보고 내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 
‘실시간 조회’ 가능

구입보고 신규보고 29:16 연장 임시저장 가져오기 보고완료 닫기

□ 기본정보 \* 담당자유대폰번호 SMS문자 수신 가능

보고일자	2020-12-22	담당자명	NIMS병원보고담당자	법적보고의무자명	NIMS대표자
취급일자	2020-12-18	담당자전화번호	02-1111-2222	담당자유대폰번호	010-1234-1234
보고사유	해당 사항없음				
비고					

□ 상대 마약류취급자 정보 ※ 구입대상 목록조회 버튼을 눌러 상대업체의 판매내역을 확인하여 구입보고가 가능합니다. 구입대상 목록조회

상대업체	NIMS테스트드매	찾기	NIMS97	상대업체 저장소	기본저장소 / S0001
------	-----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

## 취급내역불일치 조회

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 
판매↔구입, 양도↔양수, 위탁↔수탁보고 중  
상대취급자의 취급보고 건에 대응하는 보고내역 조회

취급보고 내역을 통계정보로 변환(2차 가공)하여  
제공됨에 따라 ‘익일 조회’ 가능

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관리

□ 취급내역불일치 현황

보고일자  취급일자 2020-08-02 ~ 2021-02-02 어제 오늘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

○ 정상적으로 취급보고 하였으나 목록에서 조회되는 경우 ‘취급내역불일치 예외 처리’를 통하여 확인 및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예외처리를 하여도 취급보고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며, 단지 확인여부를 관리하는 용도입니다.

# 「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」 관련 질의응답

Q

- ▶ 판매처에서는 올바르게 판매보고 했는데, 구입처에서 수량오류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판매처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나요?

A

- ☑ 구입처와 판매처의 취급내역 보고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의무와 책임 역시 각각의 취급자 행위에 부여됩니다. 따라서 마약류취급자는 실제로 취급한 제품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취급보고 하면 됩니다.

Q

- ▶ 변경보고 기한 종료일에 '취급내역 불일치 조회 기능'을 활용하여 불일치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다음 날 다시 조회해보니 불일치 내역으로 조회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?

A

- ☑ 취급내역 불일치 내역은 보고 후 다음날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, 변경보고기한 종료일 전날까지는 (변경)보고가 이루어져야 익일 최종 불일치내역을 변경보고 하신 후, 해당 월 보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. 가급적 (변경)보고종료일에 임박하지 않게 (변경)보고 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.